|  |
| --- |
| **※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  1. 답안은 문제 순서대로 작성할 것  2. 계산문제는 계산근거를 반드시 제시할 것  3. 답안은 아라비아 숫자로 원단위까지 작성할 것  (예: 2,000,000 - 1,000,000 = 1,000,000원)  4.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관련 자료·증빙의 제출 및 신고·납부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가정할 것  5.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합법적으로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풀이할 것 |

**【문제 1】(25점)**

거주자 갑, 을, 병의 2023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이다.

**(물음 1)** 갑(55세)은 ㈜A의 생산직 사원(2022년 총급여액 29,000,000원)으로 근무하다가 2023년 8월 31일에 퇴직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A가 갑의 근무기간(2023년 1월 1일～2023년 8월 31일) 중 갑에게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구 분 | 금 액 | | 기본급\*1 | 14,400,000원 | | 연장근로수당 | 4,000,000원 | | 자녀보육수당\*2 | 800,000원 | | 출장비\*3 | 1,000,000원 | | 식사대\*4 | 2,000,000원 |   \*1 월정액으로 지급  \*2 6세 이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지급한 수당으로 월정액으로 지급  \*3 시내출장에 소요된 실제 경비를 지급  \*4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250,000원씩 지급되며,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갑은 2012년에 연금저축에 가입하였고 2023년 9월 1일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였다.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구 분 | 금 액 | | 이연퇴직소득 | 20,000,000원 | | 갑의 불입액\* | 200,000,000원 | | 연금계좌운용수익 | 30,000,000원 |   \*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 8,000,000원 포함   3. 2023년에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80,000,000원이며, 의료목적·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은 없다.   4. 갑이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한 금액 이외의 소득은 다음과 같다. 모든 소득은 사업성이 없으며, 별도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는다.   |  |  | | --- | --- | | 구 분 | 금 액 |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 5,000,000원 | | 복권당첨소득\*1 | 400,000,000원 | | 주택입주지체상금 | 20,000,000원 | | 임대료 수입\*2 | 3,000,000원 |     \*1 1매당 구매액이 10,000원이며, 1매가 당첨된 것임   \*2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은 금액임 |

**<요구사항 1>**

갑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연금소득 총연금액 및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근로소득 총급여액 |  |
| 연금소득 총연금액 |  |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

**<요구사항 2>**

갑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과 종합과세 되는 기타소득금액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
|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 |  |

**(물음 2)** 을은 ㈜B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3년 6월 30일 퇴직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을은 퇴직하면서 ㈜B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 20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별도로 퇴직위로금 8,000,000원을 수령하였다.   2. 을은 2018년 1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년 100,000,000원의 총급여액을 수령하였다.   3. 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150,000,000원(매월 균등액을 수령)의 총급여액을 수령하였으며, 2023년에 90,000,000원의 총급여액을 수령하였다.   4. 을은 퇴직 후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 3채 중 1채를 임대하였다. 주택임대와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다.   |  |  | | --- | --- | | 구 분 | 내 용 | | 임대기간 | 2023. 8. 1.∼2024. 7. 31. | | 임대보증금\* | 500,000,000원 | | 월임대료 | 2,000,000원 | | 주택 취득가액 | 700,000,000원 |     \*  임대보증금은 전액 은행에 예치하였고 1,000,000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함    5. 을이 소유한 주택은 모두 기준시가가 2억원을 초과하며,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3.65%이다.   6. 근속연수 공제액     |  |  | | --- | --- | | 근속연수 | 공제액 | | 5년 이하 | 100만원×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근속연수-5년) |    7. 환산급여 공제액     |  |  | | --- | --- | | 환산급여 | 공제액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

**<요구사항 1>**

을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근로소득 해당액)을 계산하시오.

**<요구사항 2>**

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시오. 단, 퇴직소득금액은 170,00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요구사항 3>**

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시오.

**(물음 3)** 병(여성, 70세)의 2023년 종합소득 관련 자료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병의 금융소득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국외 비영업대금의 이익: 6,000,000원(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음)  ②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국채에서 발생한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할인액: 2,000,000원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입찰 보증금의 이자: 4,000,000원  ④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000,000원  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 8,000,000원 (상장주식 매매차익 30%, 이자수익 70%로 구성)  ⑥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7,000,000원  ⑦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9,000,000원(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음)  ⑧ ㈜A의 결산(결산확정일: 2023년 3월 4일)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에 의하여 병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 1,000,000원   2. 병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구 분 | 나 이 | 내 용 | | 모 친 | 90세 | 소득 없음 | | 동 생 | 65세 | 양도소득금액 1,800,000원 있음. 장애인 | | 위탁아동 | 9세 | 소득 없음. 2023년 중 8개월 동안 직접 양육함 |    3. 병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수령하였으며, 수령한 연금에 대하여 3,000,000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였다. 병의 연금소득금액은 30,000,000원이며,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다.   4.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  | | --- | --- |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24% | |

**<요구사항 1>**

병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및 배당소득 총수입금액과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  |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
| 배당가산액 |  |

**<요구사항 2>**

병의 종합소득공제액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 |
| 인적  공제액 | 기본공제액 |  |
| 추가공제액 |  |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액 | |  |

**<요구사항 3>**

병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구하기 위한 일반산출세액 및 비교산출세액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종합소득공제액은 6,000,000원으로 가정하며,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 | --- |
| 일반산출세액 |  |
| 비교산출세액 |  |

**【문제 2】(5점)**

거주자 갑이 양도한 국외 소재 토지A에 대한 자료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토지A(미등기)의 취득 및 양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취득일 | 2019. 1. 15. | | 양도일 | 2023. 7. 10. | | 실지취득가액 | $400,000 | | 실지양도가액 | $900,000 |    2. 취득일과 양도일의 환율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구 분 | 취득일 | 양도일 | | 대고객외국환매입률 | 1,250원/$ | 1,050원/$ | | 기준환율 | 1,300원/$ | 1,100원/$ | | 대고객외국환매도율 | 1,350원/$ | 1,150원/$ |    3. 토지A를 양도하면서 $30,000의 양도비용이 발생하였으며, 그 지출에 관하여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였다.   4. 보유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8%이다. |

**<요구사항 1>**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① 납세의무자, ② 양도소득의 범위 및 ③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적용순서를 5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요구사항 2>**

갑이 양도한 토지A가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양도소득금액 |  |
| 양도소득과세표준 |  |

**【문제 3】(15점)**

**(물음 1)** 상호 독립적인 각 과세사업자의 2023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3년 1월 1일∼2023년 3월 31일)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되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A는 2023년 2월 1일 ㈜대한과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도급금액 | 300,000,000원 | | 2023.3.31. 현재 작업진행률 | 25% | | 대금지급조건\* | 계약 시 10%  25% 완성 시 30%  50% 완성 시 30%  100% 완성 시 30% |   \*  ㈜A는 대금수령 시 수령한 대가의 5%를 ㈜대한에 하자보증금으로 예치하고 있음   2. ㈜B는 2022년 2월 15일 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입하고 상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23년 3월 10일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 경매처분 되었다. 경매 시 건물 관련 금액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장부가액 | 115,000,000원 | | 시 가 | 100,000,000원 | | 낙찰가 | 90,000,000원 |    3. ㈜C는 2023년 2월 21일 장기할부조건부(2023년 2월부터 매월 말일에 3,000,000원씩 총 15회 수령 조건)로 상품을 인도하면서 대가의 수령 없이 공급가액이 45,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D는 2023년 2월 23일 특수관계 없는 고객에게 상품(시가 3,000,000원)을 판매하면서 현금 2,500,000원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500,000원은 신용카드사마일리지로 결제(신용카드사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음)받았다. |

|  |
| --- |
| 5. ㈜E는 2023년 3월 10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로 공급받은 상품(매입가액 1,000,000원, 시가 2,000,000원)을 직장연예와 관련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하였다. |

**<요구사항>**

각 과세사업자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해당 금액이 없는 경우 “0”으로 표시하시오.

|  |  |
| --- | --- |
| 구 분 | 과세표준 |
| ㈜A |  |
| ㈜B |  |
| ㈜C |  |
| ㈜D |  |
| ㈜E |  |

**(물음 2)**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대한의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거래내역이다. ㈜대한은 2023년 6월 30일 폐업하였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되었다.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제품매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국내매출액 | 300,000,000원 | | 수출액 | 200,000,000원 |     ① 2022년 5월 1일 가구를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은 2022년 6월부터 매월 말일에 1,000,000원씩 총 15회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약정된 금액은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으며, 2023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수령분은 위 국내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다.  ② 국내매출액 중 20,000,000원은 수출품 생산업자의 제품을 대행수출하고 받은 수출대행수수료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수출액 중 30,000,000원은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대한 대가이다.  ④ 수출액 중 50,000,000원은 내국신용장에 의한 제품 수출액이나, 공급받은 자는 동 제품을 수출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   2. 폐업 시 잔존재화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구 분 | 취득일 | 취득가액 | 시 가 | | 제 품\*1 | 2023.5.31. | 10,000,000원 | 13,000,000원 | | 기계장치\*2 | 2022.1.15. | 30,000,000원 | 35,000,000원 | | 건 물\*3 | 2022.1.11. | 50,000,000원 | 60,000,000원 | | 토 지 | 2022.1.11. | 100,000,000원 | 110,000,000원 |   \*1 제품제조에 투입된 원재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받음  \*2 기계장치는 2022년 7월 1일부터 사업에 사용되었으며, 취득 시 3,000,000원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음  \*3 건물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하여 양수하였음. 사업양도자는 2021년 9월 1일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취득 당시 5,000,000원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음 |

**<요구사항>**

㈜대한이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 |
| 구 분 | | 과세표준 |
| 과 세 | 세금계산서 발급분 |  |
| 기 타 |  |
| 영세율 | 세금계산서 발급분 |  |
| 기 타 |  |

**(물음 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민국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각 과세기간 별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구 분 | | 과세사업 | 면세사업 | | 2022년 제1기 | | 5.5억원 | 4.5억원 | | 2022년 제2기 | | 3.7억원 | 6.3억원 | | 2023년  제1기 | 1.1.∼3.31. | 2.2억원 | 2.2억원 | | 4.1.∼6.30. | 1.8억원 | 3.8억원 |    2. 2023년 제1기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구 분 | 1.1.∼3.31. | 4.1.∼6.30. | | 과세사업 | 5,000,000원 | 3,000,000원 | | 면세사업 | 2,000,000원 | 1,000,000원 | | 과세·면세사업(공통) | 6,000,000원\* | 2,000,000원 | | 합 계 | 13,000,000원 | 6,000,000원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기계장치A의 매입세액 3,000,000원이 포함되었으며, 기계장치A는 2023년 5월 1일 50,000,000원에 매각됨. 위 ‘자료 1’의 공급가액에는 기계장치A 매각대금이 포함되지 않음   3. ㈜민국은 2022년 제2기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1억원에 취득하여 면세사업 예정사용면적비율 25%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였으며, 2023년 6월 1일 면세사업 사용면적비율을 29%로 확정하였다.   4. ㈜민국은 2022년 8월 1일 6,000,000원에 취득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B를 2023년 3월 1일부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다.   5. ㈜민국이 ㈜서울에 대한 매입채무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2021년 제2기에 ㈜서울은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민국은 매입세액공제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였다. ㈜민국은 2023년 1월 15일 ㈜서울에 해당 채무 5,5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

**<요구사항 1>**

㈜민국의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입세액공제액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구 분 | 금 액 |
| (1)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  |
| (2)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
| (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
| 차가감 계: (1) + (2) - (3) |  |

**<요구사항 2>**

㈜민국의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공제액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구 분 | 금 액 |
| (1)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  |
| (2)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
| (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
| 차가감 계: (1) + (2) - (3) |  |

**【문제 4】(5점)**

정육점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 갑의 자료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공급대가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공급대가 중 60%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이다.   |  |  |  | | --- | --- | --- | | 기 간 | 정육점업 | 음식점업 | | 2022년 | 5,000,000원 | 55,000,000원 | | 2023년 | 20,000,000원 | 50,000,000원 |    2. 2023년 매입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구 분 | 정육점업 | 음식점업 | | 세금계산서 수취 | - | 10,000,000원\* | | 일반과세자 발행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 - | 10,000,000원\* | | 계산서 수취 | 8,000,000원 | 3,270,000원  (면세농산물) |   \*  부가가치세 포함   3. 2022년 12월에 구입한 트럭을 정육점업과 음식점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다가 2023년 4월 5일 9,900,000원(공급대가)에 매각하였다. 위 ‘자료 1’의 공급대가에 트럭 공급대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4. 2023년 7월 1일 현재 음식점업 관련 보유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구 분 | 취득일 | 취득가액(공급대가) | | 원재료 | 2023. 6. 1. | 1,100,000원 | | 기계장치 | 2023. 1. 10. | 2,200,000원 | | 건 물 | 2021. 5. 1. | 22,000,000원 |    5.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  |  |  | | --- | --- | --- | | 2021년 이전 | 2022년 | 2023년 | | 10% | 15% | 20% |    6.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9/109이다.   7. 2023년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고지납부세액은 없으며, 전자신고를 하고자 한다. |

**<요구사항 1>**

간이과세자 갑의 2023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차가감납부할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납부세액 |  |
| 차가감납부할세액  (지방소비세 포함) |  |

**<요구사항 2>**

간이과세자 갑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2023년 제2기 과세기간의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하시오.

**【문제 5】(25점)**

**(물음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금강의 제23기 사업연도(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수입배당금 관련 자료이다.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금강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피출자법인 | 출자비율 | 장부가액 | 수입배당금 | 주식취득일 | | A사 | 30% | 6억원 | 45,000,000원 | 2022.6.21.  2022.11.23. | | B사 | 20% | 10억원 | 10,000,000원 | 2022.9.1. | | C사 | 40% | 5억원 | 30,000,000원 | 2022.3.3. | | D사 | 60% | 8억원 | 25,000,000원 | 2021.10.9. |   ① A사 주식 중 출자비율 10%에 해당하는 주식(장부가액 2억원)은 2022년 6월 21일에 취득하였으며, 출자비율 20%에 해당하는 주식(장부가액 4억원)은 2022년 11월 23일에 취득하였다.  ② 모든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은 2022년 12월  31일이다.  ③ 모든 피출자법인은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 및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다.   2. ㈜금강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은 다음과 같다. 수입배당금은 전부 외국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받은 것이다.   |  |  |  |  |  | | --- | --- | --- | --- | --- | | 피출자법인 | 출자  비율 | 수입배당금 | 주식  취득일 | 배당  기준일 | | E사(제조업) | 30% | 20,000,000원 | 2023.2.2. | 2023.6.30. | | F사(해외  자원개발업) | 6% | 10,000,000원 | 2023.2.9. | 2023.9.30. | | G사(도매업) | 15% | 45,000,000원 | 2023.3.1. | 2023.9.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금강의 제23기 이자비용은 70,000,000원이고 이 중 10,000,000원은 업무무관자산 관련 이자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되었다. ㈜금강의 제23기말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액은 50억원이다.     4. ㈜금강은 지주회사가 아니다.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  |  | | --- | --- | | 출자비율 | 익금불산입률 | | 20% 미만 | 30% | | 20% 이상 50% 미만 | 80% | | 50% 이상 | 100% | |

**<요구사항 1>**

㈜금강이 제23기에 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액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구 분 | 익금불산입액 |
| A사 |  |
| B사 |  |
| C사 |  |
| D사 |  |

**<요구사항 2>**

㈜금강이 제23기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액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구 분 | 익금불산입액 |
| E사 |  |
| F사 |  |
| G사 |  |

**(물음 2)**제조업을 영위하는 ㈜한국(중소기업 아님)의 제23기 사업연도(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기부금 관련 자료이다.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한국의 손익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당기순이익은 40,000,000원이며, 당기 법인세비용은 6,000,000원이다.    ② 전기에 과오납한 재산세에 대한 환급금 17,000,000원과 환급금 이자 500,000원을 당기에 수령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  |  |  |  | | --- | --- | --- | --- | | (차) | 현 금 17,500,000 | (대) | 이자수익 17,500,000 |     ③ 기부금 계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일 자 | 내 용 | 금 액 | | 2. 28. |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 가액 | 30,000,000원 | | 4. 4. | 근로복지진흥기금 기부금 | 16,000,000원 | | 7. 2. |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지출한 기부금 | 15,000,000원\*1 | | 11. 7. | 새마을금고에 지출한  기부금 | 21,000,000원 | | 12. 29. | 종교단체 기부금 | 10,000,000원\*2 |     \*1 ㈜한국이 생산한 제품을 특수관계가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한 것으로, 제품의 시가는 20,000,000원임  \*2 약속어음으로 지급되었으며, 어음의 결제일은 2024년 3월 1일임   2. ㈜한국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특수관계 없음)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200,000,000원인 토지를 300,000,000원에 매입하고, 매입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였다. |

|  |
| --- |
| 3. 제22기의 세무조정 시 기부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립대학교 장학금: 25,000,000원(전기말 현재 미지급한 상태이며, 2023년 1월 3일에 현금으로 지급함)  ② 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 2,000,000원   4. 제21기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은 80,000,000원이며, 위에서 제시한 것 외에 다른 세무조정 사항은 없다고 가정한다. |

**<요구사항 1>**

㈜한국의 제23기 차가감소득금액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당기순이익 |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
| 1) ……  2) ……  ⋮ | ⨯⨯⨯  ⨯⨯⨯  ⋮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1) ……  2) ……  ⋮ | ⨯⨯⨯  ⨯⨯⨯  ⋮ |
| 차가감소득금액 | ⨯⨯⨯ |

**<요구사항 2>**

㈜한국의 제23기 차가감소득금액이 30,0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제23기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 해당액과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 한도초과(미달)액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특례기부금 해당액 |  |
| 일반기부금 해당액 |  |
| 특례기부금 한도초과(미달)액 |  |
| 일반기부금 한도초과(미달)액 |  |

**(물음 3)** ㈜동서의 제23기 사업연도(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지급이자 관련 자료이다.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손익계산서 상 이자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구 분 | 이자율 | 이자비용 | | 사 채 | 10% | 3,000,000원 | | A은행 차입금 | 6% | 10,000,000원 | | B은행 차입금 | 4% | 5,000,000원 |   ① 사채는 채권자가 불분명하며, 이에 대한 이자비용에는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 1,485,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② A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당기말 현재 건설 중인 사옥신축용 차입금 이자 4,000,000원과 장기건설 중인 재고자산에 대한 차입금 이자 6,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B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 중 3,000,000원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른 기업구매자금대출 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다.   2. ㈜동서는 2022년 10월 1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00,000,000원(시가 70,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3. 재무상태표 상 대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지급일 | 금 액 | 대여금 적수 | | 2023. 7. 1. | 50,000,000원\*1 | 92억원 | | 2023. 9. 19. | 30,000,000원\*2 | 31.2억원 | | 2023. 10. 20. | 100,000,000원\*3 | 73억원 |   \*1 무주택 직원(지배주주 아님)에게 국민주택 취득자금으로 대여한 금액임  \*2 손금불산입액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임  \*3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액임    4. ㈜동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A은행 및 B은행과 특수관계가 없다. |

**<요구사항>**

㈜동서가 해야 하는 제23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  |  |  |  |  |
| --- | --- | --- | --- | --- |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  |  |  |  |

**(물음 4)** 제조업을 영위하는 ㈜바다의 제23기(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바다는 2023년 1월 1일에 해상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는 계약을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였다. 계약에 따르면 ㈜바다는 10년간의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 해상구조물을 철거하고 주변 수질을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해상구조물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취득원가 | 50,000,000원 | | 잔존가치 | 없음 | | 신고내용연수 | 10년 | |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바다는 해상구조물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 복구와 관련한 예상현금흐름 10,000,000원에 대하여 시장이자율을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측정하였고, 2023년 1월 1일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차) | 구축물 | | | 56,139,133 |  | |  |  | (대) | 현금 | | 50,000,000 | |  |  |  | 복구충당부채 | | 6,139,133 |      4. ㈜바다는 2023년 12월 31일에 해상구조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차) | 감가상각비 | | | 5,613,913 |  | |  | 이자비용 | | | 306,957 |  | |  |  | (대) | 감가상각누계액 | | 5,613,913 | |  |  |  | 복구충당부채 | | 306,957 | |

**<요구사항>**

㈜바다가 해야 하는 제23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  |  |  |  |

**(물음 5)** 제조업을 영위하는 ㈜서울(영리내국법인)의 제23기 사업연도(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서울은 ㈜A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600,000,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에 일괄취득하였으며, 결산상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취득가액 전부를 건물로 계상하였다. 일괄취득 시 토지와 건물의 ㈜A 장부가액과 감정평가가액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구 분 | ㈜A 장부가액 | 감정평가가액 | | 토 지 | 100,000,000원 | 300,000,000원 | | 건 물 | 100,000,000원 | 200,000,000원 |    2. ㈜서울은 전기에 비상장법인 ㈜B의 주식을 2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전기말 유보(△유보)잔액은 없다. 당기에 ㈜B가 파산하여 주식 시가가 0원이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차) | 금융자산평가손실  (기타포괄손익) | | | 20,000,000 | | |  |  | (대) | 금융자산(B주식) | | 20,000,000 |    3. ㈜서울의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과 목 | 외화금액 | 평가손익 반영전 재무상태표 가액 | 평가손익  (영업외손익) | | 외화  외상매출금 | $30,000 | 38,800,000원 | 200,000원 | | 외화선급금  (제품관련) | $12,000 | 15,480,000원 | 120,000원 | | 외화재고자산 | $50,000 | 66,500,000원 | (-)1,500,000원 | | 외화차입금 | $15,000 | 20,000,000원 | 500,000원 |    ① ㈜서울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였다.   ② 제23기말 현재 1$당 매매기준율은 1,300원이다. |

|  |
| --- |
| ③ 외화차입금은 전기말 잔액인 $45,000 중 2023년 9월 19일에 $30,000을 상환한 후의 잔액이다. ㈜서울은 외화차입금 상환차익을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하였다. 외화차입금의 전기말 △유보잔액은 6,000,000원이다.   4.  ㈜서울의 수입이자와 지급이자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2023년 1월 1일에 매입한 ㈜C 기명사채(액면가액 5억원, 액면이자율 6%, 만기 3년, 원리금 만기 일시 지급 조건)에 대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30,000,000원과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한 금액(액면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임) 7,000,000원을 손익계산서에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  ② 2023년 1월 1일에 특수관계인 ㈜D(제조업)로부터 1억원(이자율 연 9%, 차입기간 3년, 이자는 만기 일시 지급 조건)을 차입한 후 당기 기간경과분 미지급이자 9,000,000원을 손익계산서에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다. |

**<요구사항 1>**

<자료 1>과 관련하여 ㈜서울이 해야 하는 제23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  |  |  |  |

**<요구사항 2>**

<자료 2>와 관련하여 ㈜서울이 해야 하는 제23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  |  |  |  |

**<요구사항 3>**

<자료 3>과 관련하여 ㈜서울이 해야 하는 제23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  |  |  |  |

**<요구사항 4>**

<자료 4>와 관련하여 ㈜서울이 해야 하는 제23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  |  |  |  |

**【문제 6】(15점)**

**(물음 1)**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한국의 제3기 사업연도(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감가상각 관련 자료이다. ㈜한국은 설립 이후 당기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며,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기계장치A  ① ㈜한국은 2022년 7월 1일에 기계장치A를 40,000,000원에 취득하고,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기준내용연수 8년, 상각률 0.313)으로 신고하였으나, 제3기부터 정액법으로 적법하게 변경하였다.  ② ㈜한국은 제2기에 기계장치A에 대한 감가상각비 6,000,000원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③ ㈜한국은 제3기에 기계장치A의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차) | 감가상각누계액 | | | 3,500,000 | | |  | 감가상각비 | | | 4,000,000 | | |  |  | (대) | 회계변경누적효과  (이익잉여금) | | 3,500,000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4,000,000 |      2. 기계장치B  ① ㈜한국은 2023년 7월 1일에 특수관계인 ㈜대한 으로부터 기계장치B를 취득(취득당시 시가 100,000,000원)하고, 매입가액인 120,000,000원을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다.  ② ㈜대한은 기계장치B를 취득한 후 5년간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③ ㈜한국은 2023년 12월 1일에 기계장치B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이며 주기적 수선에 해당하지 않음)로 1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를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④ ㈜한국은 기계장치B에 대한 제3기 감가상각비 6,000,000원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공장건물  ① ㈜한국은 2022년 1월 1일에 공장건물을 착공하여 2023년 7월 1일에 완공하고, 즉시 사업에 사용하였다.  ② ㈜한국은 공장건물의 건설을 위하여 2022년 2월 1일에 대한은행으로부터 600,000,000원을 연 이자율 5%로 차입하고, 2023년 12월 31일에 전액 상환하였다.  ③ ㈜한국은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를 다음과 같이 각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다.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편의상 월할 계산하기로 한다.     |  |  | | --- | --- | | 구 분 | 이자비용 | | 제2기 | 27,500,000원 | | 제3기 | 30,000,000원 |     ④ 공장건물의 장부상 취득가액은 20억원이며, 공장건물에 대한 제3기 감가상각비 60,000,000원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⑤ 공장건물에 대한 신고내용연수는 20년이며, 감가상각방법은 신고하지 않았다.    4. 내용연수별 정액법 상각률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내용연수 | 4년 | 8년 | 10년 | 20년 | | 상각률 | 0.250 | 0.125 | 0.100 | 0.050 | |

**<요구사항 1>**

<자료 1>과 관련하여 ㈜한국이 해야 하는 제3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  |  |  |  |

**<요구사항 2>**

<자료 2>와 관련하여 ㈜한국이 해야 하는 제3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  |  |  |  |

**<요구사항 3>**

<자료 3>과 관련하여 ㈜한국이 해야 하는 제3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  |  |  |  |

**(물음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 ㈜대한은 2023년 3월 15일에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다. 유상감자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대한의 1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 감자 전 1주당 평가액은 6,000원이다.  2. ㈜대한은 감자대가로 1주당 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유상감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주 주 | 감자 전  주식수 | 감자  주식수 | 감자 후  주식수 | | A법인 | 40,000주 | 10,000주 | 30,000주 | | B법인 | 30,000주 | 9,000주 | 21,000주 | | C법인 | 20,000주 | - | 20,000주 | | D법인 | 10,000주 | 1,000주 | 9,000주 | | 합 계 | 100,000주 | 20,000주 | 80,000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A법인, C법인과 D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며, 그 외의 특수관계인은 없다.  4. B법인이 ㈜대한의 주식을 취득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취득일 | 주식수 | 비 고 | | 2022.10.10. | 20,000주 | 1주당 7,600원에 유상 취득 | | 2022.11.15. | 4,000주 |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으로 무상주 취득 | | 2022.12.28. | 6,000주 |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으로 무상주 취득 | | 합 계 | 30,000주 |  | |

**<요구사항 1>**

유상감자로 인한 분여이익과 관련하여 각 주주가 해야 하는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의제배당은 고려하지 아니하며, 세무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정 없음”이라고 표시하시오.

|  |  |
| --- | --- |
| A법인 |  |
| B법인 |  |
| C법인 |  |
| D법인 |  |

**<요구사항 2>**

유상감자로 인한 B법인의 의제배당액을 계산하시오.

**【문제 7】(10점)**

**(물음 1)** 2023년 3월 26일 사망한 거주자 갑(60세)의 상속세 관련 자료이다.

|  |
| --- |
| **< 자 료 >**   1.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 1,800,000,000원(상속개시일의 시가)    ② 갑이 신탁한 금전신탁: 100,000,000원  ③ 상장주식(갑은 최대주주 아님): 10,000주\*    \* 상속개시일 현재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60,000원이며,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개월 간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은 50,000원임   2. 상속개시일 현재 갑의 채무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은행차입금: 400,000,000원\*   \* 상속개시 1년 6개월 전에 차입한 금액으로 상속개시일까지 상환하지 않았으며, 차입한 자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음  ② 공과금 미납액: 12,000,000원\*   \*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강제징수비 2,000,000원 포함   3.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되는 장례비용은 없다.   4. 2020년 10월 5일에 상속인인 장남에게 토지를 증여하였으며, 증여한 토지의 시가는 다음과 같다.  ① 상속개시일의 시가: 300,000,000원  ② 증여 당시의 시가: 200,000,000원   5. 상속인으로 배우자(55세)와 장남(30세), 장녀(27세)가 있다. |

**<요구사항 1>**

갑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을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구 분 | 금 액 |
| 총상속재산가액 |  |
| 과세가액 공제액 |  |
|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 |  |
| 상속세 과세가액 |  |

**<요구사항 2>**

공동상속인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이전에 상속세 부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어진 <자료>의 범위 내에서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세법 규정이 있다면 3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물음 2)** ‘증여추정’과 ‘증여의제’의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 **끝 -**